

8. 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중병자

- 가. 신청인은 중병이 입증 가능한 진단서(원본) 제출
- 나. 소속기관(학교) 교감,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: 원본 여부 확인(별도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음)
- 다. 그 외의 신청인(신청 기간에 제출하는 경우)은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

9. 사립학교 정관

- 가. 소속기관(학교) 교감: 정관 사본에 원본 대조필 후 제출
- 나. 교육지원청 인사 담당 장학사: 정관 명시 내용 확인(별도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음)
- 다. 확인 사항: 정년퇴직 연령(62세) 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, 명예퇴직 대상자, 명예퇴직수당 지급액, 수당 지급 절차 명시
- 라. 사립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희망할 경우:
 - 1) 현 법인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(타법인 교원에서 현 학교 임기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)되고,
 - 2) 학교법인 정관에 교사 재임용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하며,
 - 3) 현 교장 임기 만료 시 교사로 재임용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함.

※ 학교(법인)에서는 자체 규정상 명예퇴직이 가능한 경우(교장 종임의결 포함)에 한해 신청하여야 하며, 필요시 정관변경 등 사전 조치

10. 사립 인사기록카드

- 가. NEIS 인사기록 확인해 정비 후 제출할 것(경력, 호봉승급, 주민등록번호, 징계 기록 등 확인)

11. 호봉 획정표

- 가. 2025. 2. 28. 기준 명예퇴직자의 최종 호봉을 확인할 수 있는 호봉획정표로 작성할 것
(※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호봉과 호봉발령연월일 기준에 맞게 호봉획정표 작성)
<유의 사항> 호봉획정기준일은 호봉발령연월일과 일치되게 작성, 경력종료일은 호봉획정일 전일 까지의 기간이 산입되도록 작성(호봉획정표 예시 참고)
- 나. 신규임용 시부터 2025. 2. 28. 기준 최종 호봉과 호봉발령연월일까지의 호봉을 검토하여 호봉정정이 필요할 시 사전에 급여 정산할 것